

## 수가 규정

(1983. 7. 1 규정 제 7 호)

개정	1995. 4. 21 규정 제 125호	1997. 3. 25 규정 제 141호
	2002. 6. 30 규정 제 210호	2004. 6. 17 규정 제 231호
	2005. 7. 28 규정 제 245호	2005. 12. 28 규정 제 246호
	2007. 3. 28 규정 제 255호	2008. 3. 26 규정 제 268호
	2008. 6. 26 규정 제 271호	2010. 6. 16 규정 제 298호
	2010. 9. 7 규정 제 301호	2011. 2. 1 규정 제 318호
	2012. 9. 28 규정 제 341호	2012. 12. 27 규정 제 345호
	2013. 4. 16 규정 제 351호	2013. 7. 5 규정 제 354호
전부개정	2018. 2. 12 규정 제 455호	2018. 12. 31 규정 제 48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구의료원(이하 “의료원”이라 한다)에서 징수하는 의료수가 및 제사용 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“의료수가 및 제사용 요금”(이하 “제요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진료행위에 따른 수가, 시설의 사용료 등 의료원에서 징수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제요금의 결정) ① 급여수가는 관련법령(국민건강보험법, 의료급여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등)에 의한다.

②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제요금은 수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수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 <2018.12.31. 규정489>

제4조(제요금의 징수) ① 제요금의 징수는 조정일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혹은 퇴원 시에 징수 할 수 있다.

② 입원실 등급 변경일의 입원실료는 전입된 입원실의 요금을 징수한다.

제5조(제요금의 감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. <2018.12.31. 규정489>

- 의료원과 감면 계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임·직원의 제요금
- 사회 공익상 필요하거나,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제요금
- 공공기관에서 직접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, 자동차보험 공단 등에서 의료원에서 치료한 실적이 있는 환자의 진료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제증명 수수료

제6조(진료촉탁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기타 일반기업체의 장이 소속 직원의 진료비를 후납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촉탁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 종결 후에 해당 기관장에게 제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97. 3. 28. 규정 141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7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개정 2002. 6. 30. 규정 210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제3항의 입원실료는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개정 2004. 6. 17. 규정 231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05. 7. 28. 규정 245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개정 2005. 12. 28. 규정 246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07. 3. 28 규정 255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08. 3. 26. 규정 268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2008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개정 2008. 6. 26. 규정 271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0. 6. 16. 규정 298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201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개정 2010. 9. 7. 규정 301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2010년 9월 13일 안치상가부터 적용한다.

수가 규정

부 칙 <개정 2011. 2. 1. 규정 318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2011년 2월 1일 분양실 사용 상가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개정 2012. 9. 28. 규정 341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개정 2012. 12. 27. 규정 345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개정 2013. 4. 16. 규정 351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2013년 4월 17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개정 2013. 7. 5. 규정 354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8. 2. 12. 규정 455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8. 12. 31. 규정 489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